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6년 3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6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동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A)	수납액 (B)	B/A (%)	지출액 (C)	C/A (%)	차기이월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6,521,007	36,744,202	100.6	28,156,074	77.1	8,588,128	23.5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B/A (%)	수납액 (C)	C/A (%)	미수 납액 (D)	D/A (%)	결손 액
합 계	36,521,007	36,907,184	101.1	36,744,202	100.6	162,431	0.4	551
현 년 도	26,694,639	26,682,348	100.0	26,617,053	99.7	65,295	0.2	-
전기미수금	80,000	1,099,357	1,374.2	1,001,670	1,252.1	97,136	121.4	551
전기이월액	9,746,368	9,125,479	93.6	9,125,479	93.6	-	-	-

○ 세출결산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불용액 (E)	비율	
				C/B (%)	D/B (%)		D	E/B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6,774,639	36,521,007	28,156,074	77.1	8,224,293	22.5	140,640	0.4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계	건설개 이	량 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3. 검토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비고
상수도공기업	36,521,007	36,744,202	28,156,074	8,588,128	

- ▶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521,00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744,202천원, 세출결산액은 28,156,074천원이고, 잉여금은 8,588,128천원임.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36,521,007	36,907,184	36,744,202	162,431	

- ▶ 세입결산액은 36,744,20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6%이며, 미수납액은 162,431천원임.

○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36,521,007	28,156,074	8,224,293	140,640	

- ▶ 세출결산액은 28,156,07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1%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24,29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5%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140,640천원이 발생하였음.

4.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입·지출 결산결과

- ▶ 수입예산 결산액은 36,907,184천원으로
수익적 수입 5,432,776천원, 자본적수입 21,249,572천원,
이월재원 10,224,836천원임.
- ▶ 지출예산 결산액은 28,156,074천원으로
수익적 지출 4,871,284천원, 자본적 지출 17,373,574천원
이월예산 지출 5,911,216천원임.
- ▶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10,127,148천원, 수입 26,617,054천원
지출 28,156,074천원, 차기이월액 8,588,128천원임.

○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 ▶ 자산총계는 195,669,225천원으로
전년 대비 9.1%인 16,246,77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672,590천원이 감소한 9,047,961천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7,919,367천원이 증가한 186,621,265천원이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대관령식수전용댐공사 등의 건설중인자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
- ▶ 부채총계는 전년 대비 343,797천원이 증가한 347,445천원임
- ▶ 자본총계는 195,321,781천원으로 전년 대비 15,902,980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보조금 증가가 그 원인임.
- ▶ 부채와 자본총계는 195,669,225천원으로 전년대비 9.1%인
16,246,777천원이 증가된 규모임.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 ▶ 수익(매출액) 은 전년 대비 11.2%증가한 4,887,756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546,848천원으로 영업이익은 총 5,434,604천원이며
- ▶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수배수비 등 매출원가는
1,540,110천원으로 전년 대비 63.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는
9,172,271천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는 등
영업비용은 총 10,712,381천원이 소요되어
- ▶ 당기순이익은 5,277,777천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적 요	금액(천원)	조 정 량(m ³)	m ³ 당 금액(원)
상수도 요금수입	4,389,669,230	3,583,467	1,224.98
총괄원가	16,705,194,871	3,583,467	4,661.74
요금인상요인(%)			280.56

- ▶ 연간조정량은 3,583,467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4,389,669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224.98원임
- ▶ 수도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6,705,195천원이며, 톤당 원가는 4,661.74원으로, 결함액은 12,315,526천원이며 280.56%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
총괄원가 산정 결과 당기 중에 적용된 효율로는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2015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 ▶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산재되어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51.9%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약품·재료비, 수선교체비등의 증가가 요금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지난 2016년 2월 19일자로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도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조정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연간생산량은 5,217,379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583,467톤으로 유수율은 68.68%로 전년 대비 12.8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 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신규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유수율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기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